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5. 14) 상정

○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5. 14)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가. 제안이유

- 부천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6회 정기회의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구성 위원으로 추가함.(안 규약 제3조)
-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2·5·8·11월) 개최하도록 함.  
(안 규약 제9조제2항)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구로구 등 인근 자치단체를 협의회 구성 단체로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 현재 구성된 자치단체와 협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결

### 6. 소수의견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제108호
의결 년월일	2007. 5. 31 (제136회)

제출년월일 : 2007. 5. 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부천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6회 정기회의(2007. 2. 20. 개최)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함.(안 규약 제3조)
- 나.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2·5·8·11월) 개최하도록 함.  
(안 규약 제9조제2항)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평구”를 “부평구·서구·강화군”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평구청장”을 “부평구·서구청장 및 강화군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부구청장”을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상·하반기로 개최하되 상반기는 3~4월중에 하반기는 9~10월중”을 “분기별로 개최하되 2·5·8·11월 넷째 주 수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시·구”를 각각 “시·군·구”로 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현행	개정안
<p>제15조(실무협의회) ① ~ ② (생략)</p> <p>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u>시·구</u>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17조(회계) ① (생략)</p> <p>② 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u>시·구</u>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p>제15조(실무협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시·군·구</u> -----</p> <p>-----</p> <p>---</p> <p>-----</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회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시·군·구</u> -----</p> <p>-----.</p>